

2017년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공모요강

2017. 4. 3

공모 사업 개요

1 사업취지

(재)삼성꿈장학재단은 「글로벌 국외장학사업」을 통해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여 세계로 흩어진 한인후손과 개발도상국 현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

2 지원자격

-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 운영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

※ 지원을 받기 위해 신설된 기관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국가 및 대상

사업구분	사업국가 및 대상
한인후손 거주국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중남아메리카 애니깁 등의 후손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아시아 최빈국	아시아 최빈국(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4

지원내용

■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원자격
글로벌 교육 복지 모델 사업	꿈도서관 사업	- 직접사업비(도서관 설치비, 도서구입비, 사서인건비, 독서강사비, 간식비, 행사진행비 등) - 운영비 - 인건비	※ 최대 지원액 : 1억 원 이하	아시아 최빈국의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한인후손 정점다리 사업	- 직접사업비(강사비, 학습보조비, 간식비, 기타프로그램비 등) - 운영비 - 인건비	※ 최대 지원액 : 6천만 원 이하	한인후손 아동·청소년에게 한국어 및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글로벌 교육공동체 사업		- 직접사업비(강사비, 학습보조비, 간식비, 기타프로그램비 등) - 운영비 - 인건비	※ 최대 지원액 : 6천만 원 이하	아시아 최빈국의 아동·청소년에게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 한 기관은 한 개 국가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규 사업의 경우 교육사업발굴을 위한 예산 신청이 가능함.

※ 지원금은 최종 선정 후,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형태

사업형태	내용
개별사업	현지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비영리단체 또는 현지의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사업	국내 혹은 현지의 비영리단체가 대표기관으로, 국내 혹은 현지의 학교, 정부,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기관으로 협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표기관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전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보고서 제출 및 회계 관리 등 재단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 공동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

5 사업기간

- 1년(2017년 9월 ~ 2018년 8월 말) 이내
단, 교육과정은 2018년 7월까지 종료

※ 기존 파트너기관은 매년 재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 시 지속적으로 지원함.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1

글로벌 교육복지모델사업

가. 꿈도서관사업

- 사업대상 : 아시아 최빈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지원자격 : 아래 공통과정을 이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관
- 최대지원액 : 1억 원 이하
 - ※ 현지 물가, 프로그램 내용, 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함.
- 지원내용
 - 직접사업비(도서관 설치비, 도서구입비, 사서인건비, 독서강사비, 간식비, 행사진행비 등)
 - 운영비(현지모니터링비, 회의비 등)
 - 인건비(국내·현지 사무국 행정인력 인건비)
 - ※ 도서관 설치비는 재단 지원금 총액의 40% 이하로 편성 가능하며, 토지는 파트너기관에서 확보해야 함.
 - ※ 운영비와 인건비의 합은 재단 지원금 총액의 25% 이하로 편성 가능함.
- 공통과정
 - 꿈도서관 설치
 -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 구입 및 출판
 - 학생 수준별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별 포트폴리오 관리
 - 사서 및 독서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지역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나. 한인후손정점다리사업

○ 사업대상 : 한인후손 거주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지원자격 : 아래 공통과정을 이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관

○ 최대지원액 : 6천만 원 이하

※ 현지 물가, 프로그램 내용, 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함.

○ 지원내용

- 직접사업비(강사비, 학습보조비, 간식비, 기타프로그램비 등)
- 운영비(현지모니터링비, 회의비 등)
- 인건비(국내·현지 사무국 행정인력 인건비)

※ 운영비와 인건비의 합은 재단 지원금 총액의 25% 이하로 편성 가능함.

○ 공통과정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별 포트폴리오 관리
- 교사 및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지역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담회 실시
-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형성

2

글로벌 교육공동체사업

- 사업대상 : 아시아 최빈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지원자격 : 아래 공통과정을 이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관
- 최대지원액 : 6천만 원 이하
- ※ 현지 물가, 프로그램 내용, 학생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함.
- 지원내용
 - 직접사업비(강사비, 학습보조비, 간식비, 기타프로그램비 등)
 - 운영비(현지모니터링비, 회의비 등)
 - 인건비(국내·현지 사무국 행정인력 인건비)
- ※ 운영비와 인건비의 합은 재단 지원금 총액의 25% 이하로 편성 가능함.
- 공통과정
 - 학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별 포트폴리오 관리
 - 교사 및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지역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담회 실시
 - 지역교육청과의 관계 형성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1 신청기간

- 2017. 4. 3(월) ~ 2017. 5. 19(금)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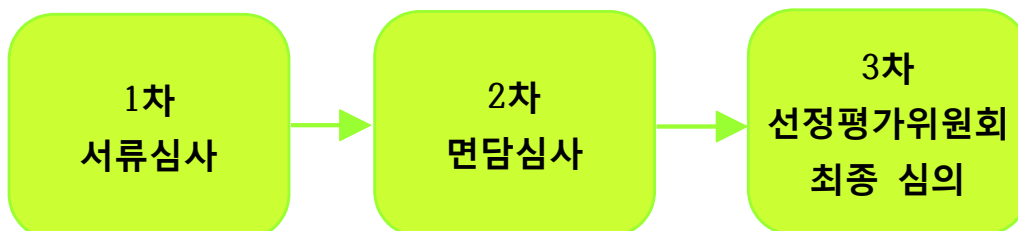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s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단체·법인(글로벌)’로 회원가입 후 My page에서 신청서 작성
-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 ID를 사용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ID를 사용)

3 사업설명회

- 일정
 - 1차 : 2017. 4. 20(목) 15:00~17:30, 재단 연수실
 - 2차 : 2017. 4. 21(금) 15:00~17:30, 재단 연수실
-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s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17년 6월 둘째주
- 면담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 2017년 6월 셋째주
- 최종발표 : 2017년 7월 둘째주

※ 위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선정기준

- 선정원칙
 - 선정절차에 공정을 기하고, 신청기관의 국가 및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대상자 및 지역의 적합성
 -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 지원 종료 후, 지역사회 내 자립운영 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 비정치성, 비종교성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 예산의 타당성
 - 홍보 계획 등

※ 지속 사업의 경우, 2016년 사업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함.

6 |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을 재단과 상호 협의·조정하여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됨.
-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선정 후 50%, 중간평가 후 50%

7 | 문의처

- 담당자 : 장학사업2팀 김효정 대리
(전화 : 02-727-5406 / 이메일 : global@sdream.or.kr)

8 | 기타

- 선정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 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처리 할 수 있음.

- 승인된 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종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는 경우
- 신청서 등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전 협의 없이 약정된 프로그램을 임의 변경하거나 혹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중간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교육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